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거주자성명	생년월일	
근무처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① 내·외국인 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생년월일	자료구분	⑤ 소 계 (⑥+⑦+⑧+ ⑨+⑩+⑪)	⑥신용 카드	⑦ 직불· 선불카드등	⑧현금 영수증	⑨도서공연 등 사용분 (총급여 7천 만원 이하자만 기재)	⑩전통시장 사용분	⑪대중 교통 이용분	⑪-1소비증가분	
												2020년 전체 사용분	2021년 전체 사용분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⑤-1 합 계 액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⑫신용카드 사용분 공제금액 (⑥×15%)	⑬직불카드등 사용분 공제금액 (⑦+⑧)×30%	⑭도서·공연등 사용분 공제금액 (⑨×30%)	⑮전통시장 사용분 공제금액 (⑩×40%)	⑯대중교통 이용분 공제금액 (⑪×40%)	⑰ 공제제외금액 계산			⑱2021년 신용카드등 사용 금액 중 2020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 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2021년 신용카드등 사용 금액)-(2020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105%)]×10%
					⑰-1 총급여	⑰-2 최저사용금액 [(⑰-1)×25%]	⑰-3 공제제외 금액	

⑰ 공제가능금액 [⑫+⑬+⑭+⑮+⑯ -(⑰-3)+⑱]	⑳ 공제 한도액 [총급여 수준별 200만 원, 250만원, 300만 원과 (⑰-1)×20% 중 적은 금액]	㉑ 일반 공제 금액 (⑰과 ㉒ 중 적은 금액)	㉒ 전통시장 추가 공제 금액 [⑱>㉑인 경우에 ⑱-㉑과 ⑮(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㉓ 대중교통 추가 공제 금액 [⑱>㉑인 경우에 ⑱-㉑과 ⑮(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㉔ 도서·공연등 추가 공제 금액 [⑱>㉑인 경우에 ⑱-㉑과 ⑮(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㉕ 2021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2020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금액 [⑱>㉑인 경우에 ⑱-㉑과 ⑮(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㉖최종 공제 금액 (㉑+㉒+㉓+㉔ +㉕)

⑰-3 계산

구분	계산식	⑰-3
⑥ ≥ (⑰-2)	(⑰-2)×15%	
⑥ + ⑦ + ⑧ + ⑨ ≥ (⑰-2) > ⑥	⑥×15% + {(⑰-2) - ⑥}×30%	
(⑰-2) > ⑥ + ⑦ + ⑧ + ⑨	⑥×15% + (⑦+⑧+⑨)×30% + {(⑰-2)-⑥-⑦-⑧-⑨}×40%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 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6서식을 말합니다) 및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 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
3. "① 내·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 관계"란은 거주자와의 관계를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5.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2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고, "그 밖의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1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와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서류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란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적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상 대중교통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 ⑦, ⑧, ⑨란에서 차감하고 "⑪ 대중교통이용분" 중 "그 밖의 자료"란에 적으며 첨부 서류 1의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 ⑥ ~ ⑪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나. "⑥ 신용카드"란, "⑦ 직불·선불카드등"란, "⑧ 도서·공연등 사용분"란, "⑩ 전통시장사용분"란, "⑪ 대중교통이용분"란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⑨, ⑩, ⑪, ⑫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습니다.
 - 다. "⑧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총급여 7천 이하인 자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 라. "⑪-1소비증가분"란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연간 전체사용금액을 적습니다.
7. ⑧번 항목의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8.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⑪-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⑫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⑬ 공제가능금액" 계산시 ⑬번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경우 적용됩니다.
11. ⑭공제한도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2020년 과세연도의 경우 330만원)과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자는 250만원(2020년 과세연도의 경우 28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자는 200만원(2020년 과세연도의 경우 230만원)입니다.
12. 도서·공연등 사용분과 도서·공연등 추가 공제금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